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606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군수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041,4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0,6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B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7.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의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34,552,000원, 농어촌특별세 6,910,400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21. 8. 12.부터 2021. 8.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1. 9. 1. 원고에게 원고가 종교단체가 아닌 학술단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 제1항에 따른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예상 세액 합계액이 8,856,460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출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21. 9. 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2021. 12. 9.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8,041,4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0,6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2. 1.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1)]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 위반

원고가 종교단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피고 역시 원고를 종교단체로 인정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2020. 12. 30.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원고의 대표자에게 전화로 '원고가 종교단체이므로 앞으로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 3년 동안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 향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가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기존의 견해표명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관계 법령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처분사유에 대한 주장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8, 11, 12, 15 내지 20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출판 사역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대예배실, 예배실, 기도실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라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교역의 관점으로 교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의 전 사역을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을 양육하여 교회와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제4조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경적 관점의 교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회의 전 사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제', '세미나 개최와 현장 임상실습', '저술, 자료개발 및 출판',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업', '본원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출판과 관련된 사업이 단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전문위원, 임상전문위원, 출판 및 자료개발전문위원이라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그 중 연구전문위원과 임상전문위원은 원장과 함께 '전반적인 연구'와 '임상실습'을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원고의 정관 제18조 내지 22조).

라) C종교단체 ○○○ D회 D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기독교교육을 '연구'하고, 교회의 제반 사역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출판'한 후 E교회를 통하여 '임상실습'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의 대표자인 F은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총 64부의 도서를 출판하였고, 그에 따른 도서인쇄비만으로 2018년 13,750,000원, 2019년 17,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세례교인이 15인 미만으로 어느 D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사) 원고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17. 12. 29. 이후에 작성되거나 촬영된 것들로, 원고의 본격적인 종교활동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0. 12. 30.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원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의 대표자에게 '원고가 종교단체이므로 앞으로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 감면신청서 하단에는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그 아래에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종교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향후 감면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판사 조○○

판사 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별지1

부동산의 표시

○○도 ○○군 [redacted]

[도로명주소] ○○도 ○○군 [redacted]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종교시설

지1층 256.8㎡

1층 264.6㎡

2층 264.6㎡

3층 264.6㎡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5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